



## 코로나 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미디어 제작에 대한 임시 지침

이 문서를 읽고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23일 화요일 기준

### 목적

코로나 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미디어 제작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Media Production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 또는 "코로나 19 미디어 제작 임시 지침"은 영화, TV, 음악 및 기타 미디어 제작 사업체의 소유자 및 관리자와 그들의 직원, 계약자 및 벤더에게 코로나 19의 확산을 방지하는 예방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생성되었습니다.

이 지침의 목적을 위해, "미디어 제작 활동"에는 세트, 장소 또는 모든 제작 또는 녹화 현장의 영화, 음악, TV 및 스트리밍 제작에서 수행되는 모든 활동이 포함됩니다.

미디어 제작 활동에는 다양한 운영이 포함되며 미디어 제작 사업체의 소유자/관리자는 해당하는 경우 관련 산업별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 지침을 참조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무실 내의 모든 활동은 "코로나 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사무실 기반 업무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Office-Based Work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 건설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코로나 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건설 활동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Construction Activitie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 모발 및 메이크업 관련 모든 활동은 "코로나 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미용실 및 이발소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Hair Salons and Barbershop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 및 "코로나 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개인 관리 서비스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Personal Care Service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에 따라 각각 운영해야 하며, 음식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활동은 "코로나 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음식 서비스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Food Service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 장소 및 부지 탐색을 위한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활동은 "코로나 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Real Estate Service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최소 요구사항일 뿐이며, 모든 미디어 제작 사업체의 소유자/관리자는 추가적인 예방조치나 제한 사항을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은 발표 당시의 가장 잘 알려진 공중보건 관행을 기반으로 하며, 이러한 지침의 기반이 되는 문서는 자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자주 변경됩니다. 아래에 정의된 바와 같이 책임 당사자(Responsible Parties)는 미디어 제작과 관련된 모든 지역, 주 및 연방 요구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한 갱신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거나 모든 미디어 제작 활동 및/또는 현장 안전 계획(Site Safety Plan)에 이를 통합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배경

Andrew M. Cuomo 주지사는 2020년 3월 7일에 행정명령(Executive Order) 202호를 발령해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코로나 19가 뉴욕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확산되었습니다. 추가적인 확산을 최소화하려면 가능한 경우 개인 사이에 최소 6피트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2020년 3월 20일에 Cuomo 주지사는 모든 비필수 사업체에 사무실 내 직원 기능을 종료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202.6호를 발표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 ESD) 지침에 따라 규정된 필수 기업은 대면 제한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보건부가 발행한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과 지시를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가능한 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받았습니다.

2020년 4월 12일에 Cuomo 주지사는 필수 사업체에 직장에 있는 직원을 위한 안면 가리개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 202.16호를 발행했으며, 업무 중 고객 또는 대중의 일원과 직접 접촉할 때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2020년 4월 15일에 행정명령 202.17호를 발행하여 만 2세 이상으로 의학적으로 안면 가리개 착용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은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하지 않을 때 코와 입을 마스크나 천 안면 가리개로 가려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2020년 4월 16일에 Cuomo 주지사는 만 2세 이상이며 의학적으로 안면 가리개 착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대중교통 또는 사적 이동 수단을 이용하거나 임대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이동 중 코와 입을 가리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202.18호를 발행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량에 승객이 있는 동안 코와 입을 덮는 안면 가리개나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대중 또는 민간 교통의 모든 사업자 또는 운전자에게 지시했습니다. 2020년 5월 29일에 Cuomo 주지사는 사업체 운영자/소유자가 안면 가리개 또는 마스크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개인에 대한 입장을 거부할 재량을 승인하는 행정명령 202.34호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 4월 26일에 Cuomo 주지사는 데이터 중심의 지역 분석을 기반으로 뉴욕의 산업과 사업체를 단계적으로 재개하기 위한 단계별 접근 방식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5월 4일에 주지사는 지역 분석 과정에서 코로나 19 신규 감염과 건강 관리 시스템, 진단 검사, 접촉 추적 능력을 포함한 여러 공중보건 요인을 고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5월 11일에 Cuomo 주지사는 지역별 계량 분석 및 지표에 근거하여 재개 1단계가 2020년 5월 15일 뉴욕의 몇몇 지역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5월 29일에 Cuomo 주지사는 재개 2단계가 주의 여러 지역에서 시작될 것이며, 뉴욕 주민, 정부 공무원 및 전문가들이 안전한 재개를 위해 바이러스가 억제되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검토하기 위해 주의 자료 수집 노력을 집계하는 새로운 조기 경고 대시보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6월 11일 Cuomo 주지사는 2020년 6월 12일 재개 3단계가 뉴욕의 몇몇 지역에서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표준을 따르는 것 외에도, 모든 미디어 제작 활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해당하는 보건부 발행 지침 및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이 문서의 지침이 뉴욕주에서 발행한 기타 지침 문서와 다른 경우에는 최신 지침이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해 주십시오.

### 뉴욕주 내 책임감 있는 미디어 제작 활동 표준

다음과 같은 최소 주정부 표준 및 해당 연방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 어떠한 미디어 제작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의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의 최소 기준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본 지침에 포함된 주정부 기준은 주정부가 철회 또는 개정하기 전까지 코로나 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운영하는 모든 미디어 제작 활동에 적용됩니다. 미디어 제작 사업체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두 경우

모두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표준을 충족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지침의 목적을 위해 "직원, 출연자 및 크루"에 대한 언급에는 연기자, 노동자, 숙련공, 음악가, 작가, 감독, 시각 효과, 헤어 스타일리스트, 의상 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미디어 제작 활동에 관련된 모든 개인이 포함됩니다.

다음 지침은 사람, 장소 및 절차의 세 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 I. 사람

### A. 물리적 거리두기

- 책임 당사자는 실내 미디어 제작 시설 또는 장소에 있는 직원, 출연자, 크루 구성원을 점유 허가에 설정된 특정 구역 최대 점유 인원의 **50%** 이하로 제한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미디어 제작 시설 또는 장소 주변의 모든 장소(예: 식사 공간, 공용 구역, 대기 구역, 트레일러, 비디오 빌리지, 장비 구역)에 있는 모든 직원, 출연자 및 크루 간에 최소 **6 피트**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미디어 제작 중 특정 기능은 다른 개인의 **6 피트** 내에 들어가는 것(예: 의상, 헤어, 메이크업, 사운드, 촬영, 공연)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기능을 식별하고 영향을 받는 개인의 위험 완화를 위한 절차를 구현해야 합니다.
  - 또한 안전상 또는 핵심 활동(예: 장비 이동, 자재 하역)이 개인들이 더 짧은 거리 내에 있기를 필요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은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개인이 만 **2 세** 이상이고 의학적으로 그러한 안면 가리개를 감당할 수 있는 경우 미디어 제작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모든 직원, 출연자 및 크루가 항상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공연이나 리허설 중 또는 헤어, 메이크업, 의상과 같은 핵심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연기자는 일시적으로 안면 가리개를 벗을 수 있습니다. 연기자는 위의 활동을 하고 가능한 한 빨리 안면 가리개를 써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안면 가리개가 없는 연기자와 밀접하게 있는 모든 직원, 출연자, 크루(예: 헤어 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의상 디자이너, 음향 기술자, 스튜디오 강사, 스탠트 코디네이터, 특수 효과 기술자)가 근접해야 하는 활동 중 안면 보호대 또는 고글 등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와 눈 보호구를 두 가지 모두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직원, 출연자 및 크루는 장갑을 착용하거나 이러한 활동 전후에 손 위생을 시행해야 합니다.
  - 코로나 19 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면 가리개에는 입과 코를 모두 덮는 천 기반 안면 가리개와 일회용 마스크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천, 일회용 또는 기타 수제 안면 보호대는 작업 특성상 일반적으로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에 높은 수준의 보호를 요구하는 작업장 활동에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가 아닙니다. 이러한 활동의 경우 **OSHA 지침**에 따라 정의된 대로 기존 산업 기준 하에서 사용되는 **N95** 인공 호흡기 또는 기타 **PPE** 를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실내 및 실외 미디어 제작 활동에 필수적인 개인으로만 직원, 출연자 및 크루의 수를 제한하고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엄격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필수적이지 않은 직원 및 방문자(예: 친구, 가족, 손님, 방문자)는 미디어 제작 시설이나 장소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는 동반 성인 2 명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예: 12 뉴욕법(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NYCRR) 186-3.6 (a)에 따른 한 명의 보호자 또는 지정된 책임자). 연기 또는 리허설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린이는 미디어 제작 품목 또는 장비를 만지거나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미성년자를 안전한 세트 밖 장소로 이동시켜 다른 직원, 출연자 및 크루에게 노출되는 것을 제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미디어 제작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접근을 필수 개인에게만 한정하고 외부에 모이는 사람을 분산시키는 보안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보안 조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미디어 제작 장소를 정찰하거나 선택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 요구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장소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장소가 모든 작업 영역 및 부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요구사항을 준수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 적절한 세척, 소독 및 위생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출연자 및 크루가 모든 방향(예: 좌우 및 서로 마주할 때)에서 최소 6 피트 이상 떨어져 있고 사용 사이에 청소 및 소독 없이 워크스테이션을 공유하지 않도록 워크스테이션 및 좌석 공간의 사용을 수정 및/또는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워크스테이션 간에 거리두기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책임 당사자는 물리적 장벽(예: 공기 흐름, 난방, 냉각 또는 환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달리 건강 또는 안전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지역에서 플라스틱 차폐벽)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물리적 장벽은 OSHA 지침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 물리적 장벽 옵션에는 스트립 커튼, 플렉시 유리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 또는 기타 불침투성 칸막이 나 파티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미디어 제작 시설 또는 위치 내에서 전용 작업 영역의 사용을 장려하고 동일한 작업 공간 내에 부서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구역과 적절한 직원, 출연자 및 크루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색상으로 구분된 시스템 또는 기타 가시적 표시를 고려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개인이 작은 공간(예: 엘리베이터, 기계 구역, 제어실, 편집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단, 이 공간에 있는 모든 개인이 동시에 허용되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거나 촬영 또는 공연에 필수적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안면 가리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 명의 탑승자가 사용하도록 설계하지 않는 한 점유 공간이 공간 최대 수용 인원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 당사자는 안전 절차를 유지하면서 실외 공기와의 환기를 최대한 늘려야 합니다(예: 창문 및 문 열기). 책임 당사자는 엘리베이터 대기 구역에서의 모임을 방지하고 엘리베이터의 밀집도를 제한하기 위해 계단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테이프 또는 화살표가 있는 표지판 등으로 좁은 통로, 복도, 공간에 양방향 도보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영역 또는 일반적으로 줄이 형성되거나 사람이 모이는 구역(예: 건강 선별 스테이션, 식사 구역, 의상 트레일러)에 6 피트의 공간을 나타내는 표지판 및 거리 마커를 게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한 최대한의 범위로 미디어 제작 활동을 원격으로 수행해야 합니다(예: 회의, 캐스팅, 스카우트, 편집).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모든 스카우트 활동이 가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이 직접 이동해야 할 경우, 책임 당사자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소그룹으로 스카우트를 진행하고, 모든 개인이 적절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캐스팅 및 오디션이 가능한 한 원격으로 수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원격으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을 준수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공유하는 표면의 청소 및 소독을 위해 약속 사이에 적절한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캐스팅 장소에 도착한 출연자가 오디션 시점까지 개인 차량 또는 시설 또는 장소 밖에서 대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예정된 약속을 위하여 공개 모집 오디션을 없애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오디션 중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오디션을 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물리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위의 조항에 따라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허용하기 위해 특정 시간에 차량을 이용하는 개인의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한 개인이 혼자 운전하고 개인 교통 수단을 사용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 한 차량에 두 명 이상의 개인이 탑승하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모든 탑승자가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고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탑승자가 창문을 열고 환기를 늘리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스크립트 수정 또는 디지털 효과 사용과 같이 연기자 간의 밀접 또는 근접한 접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개인 간의 장기적인 밀접한 접촉 또는 근접 접촉(예: 싸움, 춤)이 있는 장면 또는 대규모 군중이 필요한 장면을 제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밀접 또는 근접 접촉 수를 제한하기 위해 유지 보수 직원을 고정된 두 명 또는 소규모 그룹으로 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시설 또는 장소 전체에 보건부 코로나 19 표지판과 일치하는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해당 표지판이 부서의 표지판과 일치한다는 전제하에 자신의 직장 또는 환경에 맞는 자체 맞춤형 표지판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표지판은 직원, 출연자 및 크루에게 다음을 알리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 아프다면 집에 머무르도록 알립니다.
  - 안면 가리개로 코와 입을 가리도록 알립니다.
  - 개인 보호 장비를 제대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폐기하도록 알립니다.
  -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도록 알립니다.
  - 개인이 코로나 19에 대한 증상이나 노출을 보고하도록 하고, 그 방법을 알립니다.

- 손 위생과 세척 및 소독 지침을 따르도록 알립니다.
- 적절한 호흡기 위생과 기침 에티켓을 따르도록 알립니다.

## B. 밀폐된 공간에서의 모임

- 책임 당사자는 대면 직원, 출연자, 크루 모임(예: 제작 회의, 캐스팅, 스카우트, 편집)을 제한하고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인 "코로나바이러스 2019(코로나 19) 계획 및 대응을 위한 사업체 및 운영자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Businesses and Employers to Plan and Respond to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에 따라 가능한 한 최대한 동영상 또는 화상회의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화상회의 또는 통신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통풍이 잘되는 열린 공간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이 서로 6 피트 떨어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예: 의자가 있는 경우, 의자 사이에 공간을 두고 개인이 의자를 하나씩 띄어 앉게 함).
- 책임 당사자는 점유 인원을 제한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절차를 허용하지 않는 필수적이지 않은 시설 및 공용 구역을 폐쇄하여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책임 당사자는 해당 편의 시설(예: 자동판매기, 공용 커피 스테이션, 음수대, 스낵 바) 근처에서 손 소독제 또는 소독용 물티슈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화장실이나 휴게실과 같은 좁은 지역에서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보하기 위한 관행을 마련해야 하며, 그러한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점유 인원을 제한하기 위한 표지판과 시스템(예: 사용 시 표시)을 개발해야 합니다.
- 또한 책임 당사자는 직원, 출연자, 크루들이 모임(예: 휴식 시간, 식사, 교대근무 시작/중지) 시 사회적 거리두기(즉, 6 피트 공간)를 관찰할 수 있도록 일정을 교대로 배치해야 합니다.

## C. 직장 활동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트 내 엑스트라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 담당 당사자는 유급 직원, 출연자 및 크루로만 구성되지 않는 한 실시간 청중을 금지해야 합니다. 직원, 출연자 및 크루는 100 명 또는 청중 수용 인원의 25%(둘 중 적은 인원) 이하의 실시간 청중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청중들은 모든 방향에서 최소 6 피트 이상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엑스트라를 포함한 출연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촬영 준비" 상태로 미디어 제작 시설 또는 장소에 도착하도록 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예: 현장 밖에서 또는 원격 지시를 통해 헤어, 메이크업, 의상을 마치기).
- 책임 당사자는 여러 사람이 이러한 장비를 사용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장비와 기기(예: 카메라, 소품)를 청소하고 소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직원, 출연자 및 크루에게 온종일 제공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모든 종이 문서를 가능한 한 디지털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예: 계약서, 기술 스카우트 패킷, 스크립트, 악보, 출퇴근 기록, 크루 목록, 콜 시트). 디지털화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인쇄물을 개별적으로 사용하도록 할당해야 하며 직원, 출연자 및 크루 간에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모든 직원, 출연자 및 크루가 코로나 19 안전, 위생, 청소 및 소독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대인 접촉 및 모임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관련 미디어 제작 활동에 반드시 있어야 할 직원만 있도록 제한합니다.
  - 직장 시간 조정.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수용하기 위해 현장 인력 감소.
  - 교대근무 설계(예: A/B 팀, 도착/출발 시간 교차)
  - 사회적 거리두기를 허용하는 작업을 그렇지 않는 활동보다 우선하기 및/또는
  - 예정된 작업을 교대로 배치하고 한 지역에서 여러 직원 및/또는 팀이 일하는 경우를 피하고 점유 지역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사용.

#### D. 이동 및 상업

- 책임 당사자는 미디어 제작 시설 또는 장소의 상호작용(예: 근무 교대를 끝내고 떠나는 직원, 출연자, 크루의 출구 및 근무를 시작하는 직원, 출연자, 크루의 입구 별도 지정) 및 이동을 제한(예: 직원, 출연자, 크루는 가능한 한 자주 자신의 워크스테이션 또는 구역 근처에 머물러야 함)해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1) 직원, 출연자, 크루의 건물로의 이동을 관리하고 점유/수용 인원 제한을 모니터링하고 (2) 화재 안전 및 기타 규정을 준수하면서 건강 선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미디어 제작 시설 또는 장소로의 입구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출연자, 크루를 위해 적용 가능한 경우 미디어 제작 시설 또는 장소 또는 선별 장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줄을 설 때 6 피트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픽업 및 배달을 위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능한 한 접촉을 제한합니다.
- 배송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배송이 진행되는 동안 운전자가 차량의 운전석에 머물러 있는 무접촉 배송 시스템을 구현하거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배송 절차 동안 예상 활동에 허용 가능한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최소한 안면 가리개 등)를 무료로 배송 관련 직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물품의 화물을 옮기기(예: 배송 운전자로부터) 전후에 직원이 손을 소독하도록 해야 합니다(예: 물품을 적재하기 시작 전에 손을 소독하고, 모든 물품을 적재한 후 다시 손을 소독하여 마무리).

## II. 장소

### A. 보호 장비

- 책임 당사자는 개인이 만 2 세 이상이고 의학적으로 그러한 안면 가리개를 감당할 수 있는 경우 미디어 제작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모든 직원, 출연자 및 크루가 항상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공연이나 리허설 중 또는 헤어, 메이크업, 의상과 같은 핵심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연기자는 일시적으로 안면 가리개를 벗을 수 있습니다. 연기자는 위의 활동을 하고 가능한 한 빨리 안면 가리개를 써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안면 가리개가 없는 연기와 가까이 있는 모든 직원, 출연자, 크루(예: 헤어 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의상 디자이너, 음향 기술자, 스튜디오 강사, 스텐트 코디네이터, 특수 효과 기술자)가 밀접해야 하는 활동 중 안면 보호대, 고글 등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와 눈 보호구를 두 가지 모두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직원, 출연자 및 크루는 장갑을 착용하거나 이러한 활동 전후에 손 위생을 시행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특정 직장 활동에 필요한 모든 개인 보호 장비뿐만 아니라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를 조달, 제작, 또는 기타 방식으로 획득하고 직장에서 모든 직원, 출연자, 크루 구성원에게 비용 없이 그러한 가리개를 제공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모든 직원, 출연자, 크루 구성원이 교체해야 하는 경우를 위해 안면 가리개, 마스크 및 기타 필수 개인 보호 장비 공급을 적절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 안면 가리개는 사용 후 청소하거나 교체해야 하며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천 소재 안면 가리개 및 기타 유형의 개인 보호 장비에 대한 추가 정보와 사용 및 세척에 대한 정보는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천, 일회용 또는 기타 수제 안면 보호대는 작업 특성상 일반적으로 개인 보호 장비에 높은 수준의 보호를 요구하는 작업장 활동에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 주십시오.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안전 장비에 대한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출연자, 크루가 자신의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지만, 직원, 출연자 및 크루가 자신의 안면 가리개를 스스로 공급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지침은 직원, 출연자 및 크루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추가 보호 가리개(예: 수술용 마스크, N95 마스크 또는 안면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을 막지 않으며, 또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책임 당사자가 업무 성격으로 인해 직원, 출연자 및 크루에게 더 보호가 잘되는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고용주는 적용 가능한 모든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적절한 안면 가리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개인 보호 장비를 적절히 쓰고, 벗고, 청소(해당하는 경우)하고, 폐기하는 방법에 대해 직원, 출연자, 크루를 교육해야 합니다.

## B. 위생, 청소 및 소독

- 책임 당사자는 "[코로나 19 민간 및 공공 시설 청소 소독에 대한 지침](#)"(Guidance for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Public and Private Facilities for COVID-19) 및 해당되는 경우 "[확산 방지](#)"(STOP THE SPREAD) 포스터를 포함하여 CDC 및 DOH가 권고하는 위생 및 소독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청소 및 소독의 날짜, 시간 및 범위를 포함하는 일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미디어 제작 시설 또는 장소에 손 위생 스테이션을 제공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 손 씻기용: 비누, 흐르는 따뜻한 물, 일회용 종이 타올.
  - 손 소독용: 손 씻기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실행 불가능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최소 60% 알코올을 함유한 알코올 기반 손 소독제.
  - 책임 당사자는 공용 구역(예: 입구, 출구, 전시 및 보안/접수 데스크) 전체에서 손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비접촉식 손 소독제 디스펜서를 설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눈에 띄게 더러워진 손을 비누와 물로 씻어야 함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손 소독제 스테이션 근처에 놓습니다. 손 소독제는 눈에 띄게 더러워진 손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개인 보호 장비를 포함한 더러워진 물품을 처분하기 위해 시설 또는 장소 주변에 쓰레기통을 놓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공유되고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위해 적절한 청소 및 소독 용품을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표면 사용 전후에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직원, 출연자 및 크루가 이러한 용품을 사용하고 손 위생을 시행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미디어 제작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많은 개인이 사용하는 고위험 지역 및 자주 접촉하는 표면(예: 스튜디오, 제작 세트, 헤어 및 메이크업 스테이션, 트레일러, 휴식 공간, 식사 공간, 차량)은 더 자주 청소 및 소독해야 합니다. 청소 및 소독은 엄격하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적어도 각 촬영, 매일, 또는 필요에 따라 더 자주 시행해야 합니다. 시설 청소 및 소독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DOH의 "코로나 19 대비 공공 및 민간 시설의 청소 및 소독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Public and Private Facilities for COVID-19)을 참조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화장실의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을 보장해야 합니다. 화장실은 사용 빈도에 따라 더 자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화장실 수용 인원을 줄이기 위해 표지판, 사용 중 표시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거리두기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등록된 소독제를 사용하여 모든 미디어 제작 장비 및 도구(예: 케이스, 카메라, 접안렌즈, 렌즈, 모니터 및 터치스크린, 돌리)를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코로나 19에 효과적인 것으로 뉴욕주에 등록되고 환경보호국이 확인한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제품 목록을 참고하십시오.
  - 상품을 세척하거나 소독하거나 청소 및 소독하는 행위로 안전상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자재 또는 기계를 손상시키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사용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손 위생 스테이션 및/또는 일회용 장갑을 제공 및/또는 이러한 물체를 사용하는 개인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코로나 19 양성 사례가 발생할 경우 노출 구역을 청소 및 소독해야 하며, 청소 및 소독 시 최소한 모든 통행량이 많은 지역 및 접촉이 잦은 표면(예: 공유 표면, 차량, 난간, 핸들, 손잡이)을 포함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모든 소품, 의상 및 세트 자재를 각 사용 사이에 세척 및 소독하고 사용 사이에 밀봉된 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각 사용 사이에 의상을 모아 세탁하거나 세척 및 소독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깨끗한 의상은 개별 가방에 밀봉해야 합니다. 세탁 사이에 사용한 의상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출연자에게 세탁 백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 코로나 19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경우 "시설 청소 및 소독"(Cleaning and Disinfecting Your Facility)에 대한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 19로 의심되거나 확진된 사람이 사용한 영역을 폐쇄합니다.
    - 영향을 받은 지역을 폐쇄할 수 있는 경우 책임 당사자가 반드시 운영을 폐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외부 문과 창문을 열어 해당 지역의 공기 순환을 늘립니다.
  -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24 시간 기다리십시오. 24 시간을 기다릴 수 없으면 가능한 한 오래 기다리십시오.

- 사무실, 화장실, 공용 구역 및 공유 장비와 같이 코로나 19로 의심되거나 확진된 환자가 사용한 모든 구역을 청소하고 소독합니다.
- 구역을 적절하게 청소하고 소독하면 다시 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된 사람과 밀접히 또는 근접하게 접촉하지 않은 직원, 출연자 및 크루는 청소 및 소독 후 즉시 작업 영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밀접 및 근접" 접촉에 관한 정보는 보건부의 "코로나 19 감염 또는 노출 이후 직장에 복귀하는 공공 및 민간 노동자를 위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Returning to Work Following COVID-19 Infection or Exposure)을 참조하십시오.
- 코로나 19로 의심되거나 확진된 환자가 방문하거나 시설을 이용한 후 7일을 초과하여 지났을 경우 추가 청소 및 소독은 필요하지 않지만, 일상적인 청소 및 소독은 계속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개인 및 부서 간의 물체, 기기 및 장비(예: 라디오, 카메라 장비 및 돌리, 스텐트 패드, 가발, 의상)의 공유뿐만 아니라 난간 및 문 손잡이와 같은 공유 표면의 접촉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 출연자 및 크루가 공유 물체 또는 자주 만지는 표면과 접촉할 때 장갑(업계에 적합한 또는 의료용)을 착용하거나 접촉 전후에 손 위생을 수행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공유 장치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통신용 개인 장치(예: 무전기, 라디오, 마이크)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비는 배포하기 전에 그리고 반납하기 전에 적절하게 세척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출연자 및 크루 간 음식 및 음료 공유(예: 셀프서비스 식사 및 음료)를 금지하고, 직원, 출연자 및 크루가 식사를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관찰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셀프서비스가 아니며 직원, 출연자 또는 크루가 공용 물체(예: 숟가락, 집게)를 만지지 않도록 충분히 직원을 갖추고 적절한 사회적 거리가 유지되는 경우 뷔페를 통해 음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개인 간의 공유를 제한하기 위해 사전 포장된 용기에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식음료를 제공하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일회용 또는 개별적으로 포장된 식사 도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요청 시 개별 배급을 위해 신문이나 잡지 스탠드 등 불필요한 공동 비품을 장소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 C. 단계적 재개

- 책임 당사자는 제작 또는 작업 활동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기 전에 운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변경에 대해 운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첫 재개 시 직원, 출연자 및 크루 수 및 그들의 근무 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D. 의사소통 계획

- 책임 당사자는 주가 발행한 산업 지침을 검토하고 이해했으며 이를 시행할 것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출연자, 크루를 위해 적용 가능한 지침, 교육, 표지판 및 직원, 출연자 및 크루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관된 수단을 포함하는 의사소통 계획을 개발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웹페이지, 문자 및 이메일 그룹, 소셜 미디어 개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구두 의사소통 및 표지판을 통해 개인이 개인 보호 장비, 특히 안면 가리개에 관한 질병 통제 예방 센터 및 보건부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적절한 위생,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 개인 보호 장비의 적절한 사용, 청소 및 소독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개인에게 상기시키도록 미디어 제작 시설 또는 장소 안과 밖에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 III. 절차

#### A. 선별 및 검사

- 책임 당사자는 업무 기능 또는 역할이 출연자들과 밀접 또는 근접한 접촉을 포함하는 직원, 출연자, 크루 구성원이 미디어 제작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진단 검사를 통해 코로나 19를 검사하고 그 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현장 또는 장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출연자, 크루 및 가능한 경우 계약자 및 벤더를 위해 의무적으로 일일 건강 선별 관행을 시행해야 하지만, 배송 직원에게 이러한 선별을 의무화해서는 안 됩니다.
  - 선별 관행은 개인이 시설 또는 장소에 입장하기 전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격으로 수행(예: 전화 또는 전자 설문 조사)할 수 있으며, 또는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선별이 완료되기 전에 개인이 서로 밀접하거나 근접한 접촉을 하지 않도록 선별을 조정해야 합니다.
  - 최소한 모든 직원, 출연자 및 크루 구성원, 가능한 경우 계약자 및 벤더에 대해 선별이 필요하며,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 (a) 알면서 지난 14일 동안 코로나 19 검사 결과 양성인 자 또는 코로나 19 증상이 있거나 있었던 자와 밀접 또는 근접 접촉함.
    - (b) 지난 14일 동안 코로나 19 검사 결과 양성 및/또는
    - (c) 지난 14일 동안 코로나 19의 증상이 있었음.
- 코로나 19와 관련된 증상에 대한 최신 정보는 "코로나바이러스 증상"(Symptoms of Coronavirus)에 대한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선별 관행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시설/장소 구성이 허용한다면, 코로나 19 의심이나 확진 사례의 경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구 또는 근처에서 개인을 선별합니다.
  - 개인이 선별 및/또는 시설 또는 장소 입장을 위해 대기하는 동안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허용합니다.
  - 원격으로 선별하거나 도착 시 선별된 개인만 입장시키십시오.
  - 체온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입구에서 비접촉 열상 카메라를 사용하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을 식별하고 이차 선별 구역으로 안내하여 추적 선별을 완료합니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거나 실현 불가능한 경우 비접촉식 체온계를 사용하여 체온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앞에서 언급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 변경되는 경우, 근무 시간 중 또는 근무 시간 외를 포함하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경우와 같은 때에 즉시 알리도록 직원, 출연자 및 크루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 선별 설문지 외에도 미국 고용 평등 기회 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또는 보건부 지침에 따라 체온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직원, 출연자, 크루 건강 자료(예: 개인의 특정 체온 자료)에 대한 기록을 보관할 수 없지만, 개인이 선별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기록 및 선별 결과(예: 합격/불합격, 허가/허가되지 않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체온 점검을 포함한 선별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직원이 감염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진입하는 개인에 대한 노출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해야 합니다. 선별 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은 질병 통제 예방 센터, 보건부 및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절차에 익숙한 고용주가 식별한 개인에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선별 담당자는 최소한 허용되는 안면 가리개 또는 마스크를 포함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받고 사용해야 하며 여기에는 장갑, 가운 및/또는 안면 보호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 증상에 양성으로 선별된 모든 직원, 출연자, 크루 구성원 또는 벤더는 미디어 제작 시설 또는 장소에 들어가서는 안 되며, 진단 및 검사를 위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라는 지침을 동반하여 집으로 보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의료 및 검사 자원에 대한 정보를 원격으로 해당 개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코로나 19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 주 및 지역 보건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개인이 코로나 19 가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또는 개인이 코로나 19 에 걸린 사람과 밀접하거나 근접한 접촉을 한 후 직장에 복귀할 때의 절차 및 정책에 관한 보건부의 "코로나 19 감염 또는 노출 이후 직장에 복귀하는 공공 및 민간 노동자를 위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Returning to Work Following COVID-19 Infection or Exposure)을 참조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활동, 위치, 교대근무 또는 일자에 따라 다양할 수 있고 모든 직원, 출연자, 크루, 계약자, 벤더의 설문지를 받고 검토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중앙 연락처를 지정해야 하며, 이러한 연락처는 직원, 출연자, 크루, 계약자 및 벤더가 후에 코로나 19 관련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설문지에 통보된 대로 알릴 당사자로 식별됩니다.
  - 식별된 연락처는 양성 사례에 대해 개인으로부터 통지를 받고 각각의 청소 및 소독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모든 개인을 위해 현장 안전 계획의 모든 측면에 대한 지속적인 준수 등을 담당하는 현장 안전 모니터 요원을 지정합니다.
- 가능한 한, 책임 당사자는 미디어 제작 시설 또는 장소에서 다른 개인과 밀접 또는 근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직원, 출연자, 크루 구성원, 계약자 및 벤더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한 일지를 유지하며,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이용해 또는 비접촉 수단을 통해 수행되는 배달은 제외합니다. 일지에는 개인이 코로나 19 로 진단될 경우 모든 접촉을 식별, 추적 및 통보할 수 있는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주 및 지역 보건부의 접촉 추적 노력에 협력해야 합니다.

## B. 추적

- 책임 당사자는 미디어 제작 시설 또는 장소의 모든 개인 직원이 코로나 19 검사 결과 양성임을 알리면 즉시 주 및 지역 보건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사업체에서 상호작용한 모든 직원, 출연자, 크루 구성원 또는 계약자가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책임 당사자는 주 및 지역 보건부와 협력하여 미디어 제작 시설 또는 장소의 모든 접촉을 추적하고 그들이 코로나 19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하거나 검사 결과 양성인 시점(둘 중 더 이른 시점) 전 48 시간 이내에 미디어 제작 시설 또는 장소에 입장한 모든 기록된 개인(해당하는 경우)을 주 및 지방 보건부에 알려야 합니다. 연방 및 주의 법과 규정의 요구에 따라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 현장에 있는 동안 개인이 증상을 보이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주변 지역의 직원에게 즉시 건물 전체에서 해당 개인이 있었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알려야 하며, 증상이 있는 사람이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이를 알려야 합니다.
- 주 및 지역 보건부는 자택 격리 또는 검역을 포함하여 감염되거나 노출된 사람의 모니터링 및 이동 제한을 시행합니다.
- 코로나 19에 걸린 사람과 밀접한 또는 근접한 접촉을 했다고 경고받고 추적 또는 기타 메커니즘을 통해 경고를 받은 개인은 경고 시점에 고용주에게 자가 보고해야 하며 위에 언급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IV. 고용주 계획

책임 당사자는 작성된 안전 계획을 직원을 위해 현장 또는 장소에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사업체 소유자 및 운영자가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도록 안내하는 사업체 재개 안전 계획 템플릿을 제공했습니다.

**추가 안전 정보, 지침 및 자료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웹사이트  
<https://coronavirus.health.ny.gov/>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웹사이트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코로나 19 웹사이트  
<https://www.osha.gov/SLTC/covid-19/>

[아래 링크에서 이 지침에 따라 운영해야 하는 귀하의 의무를 읽고 이해했는지 확인하십시오.](#)

<https://forms.ny.gov/s3/ny-forward-affirmation>